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환경수자원위원회 한신 의원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!

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한신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

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대규모 개발지구 사업시행과 대규모 개발지구 이외 시설 등에서 수돗물을 사용할

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 및 시민 급수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

이에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수도시설 자산 등을 반영함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.

아무쪼록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!